##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8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권칠승·박 정·서미화

문금주 • 전진숙 • 송옥주

민병덕 · 윤종군 · 한민수

정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 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제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중 "긴급상황"을 "긴급상황(제1급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
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	발명의 실시) ①
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긴급상황(제1급 감염병의 확산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	
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